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4년 9월 4일
- 회 부 일 : 2014년 9월 5일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3. 12. 12. 시행)에 따라 종전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4. 4. 3. ~ 4. 23) 결과 : 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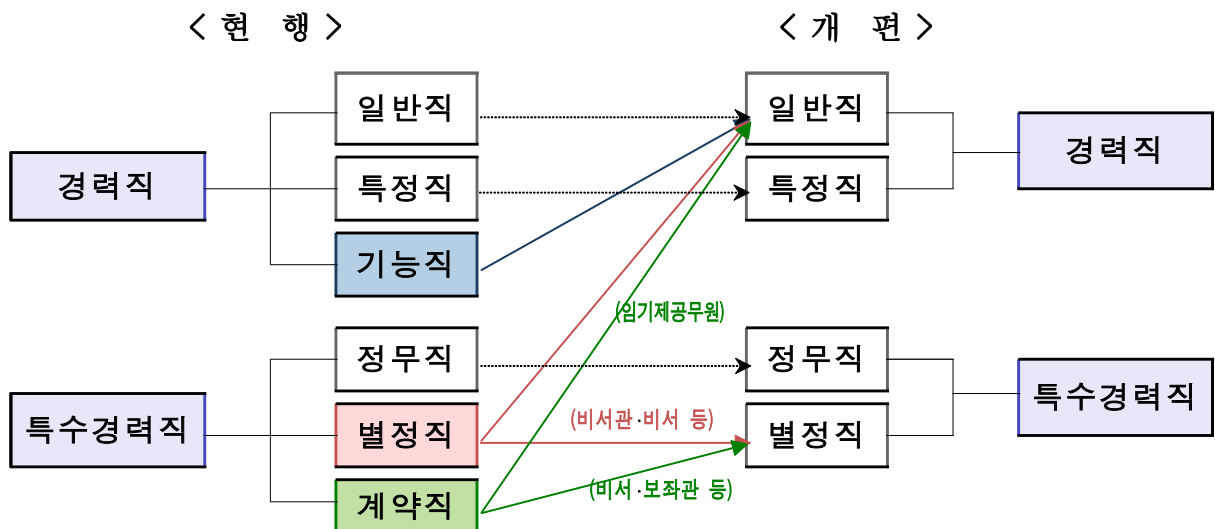
5. 검토 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 12. 12 개정·시행)에¹⁾ 따라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하고,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임용자격·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법」 개정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기 위함임.

- 종전의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직렬, 일반직 신설,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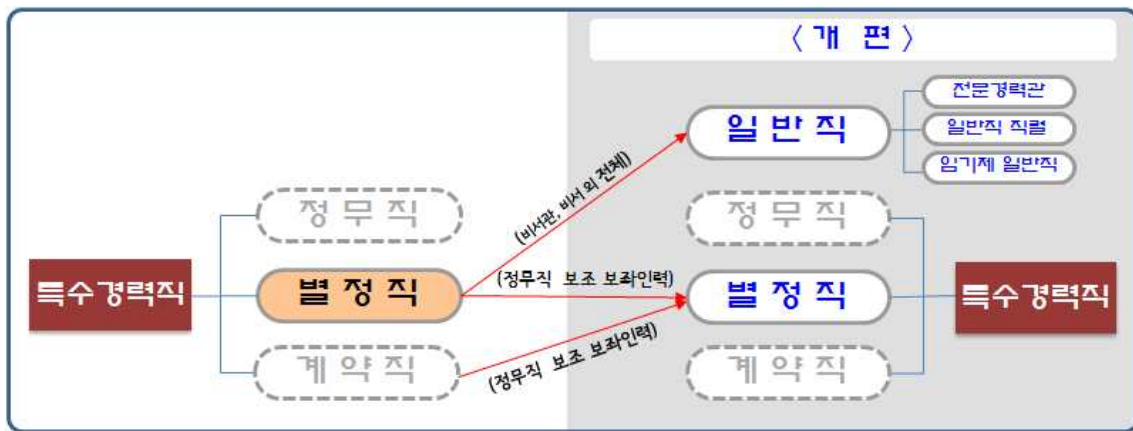
1) 현행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



〈별정직 공무원 전환 개요〉

구 분	업무성격	전환개요
별정직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 해당직렬로 임용, 전담직위 지정 → 전담직위평가 후 해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특정 전문분야 담당, 순환전보 곤란	⇒ 전문경력관 지정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으며 상당인원 재직, 계급제적 성격	⇒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
	임기가 있는 직위	⇒ 임기제 일반직

〈 별정직 직종개편 체계도 〉



※ 상세내역은 참고자료 ① 참조.

- 직종 개편(2013.12.12) 당시 126명이던 별정직은 16명만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약직 공무원 중 비서실장, 정무특보, 국제관계대사 등 정무직 보좌 업무 수행 공무원 20명이 별정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서울시에는 현재 퇴직 등으로 총 35명의 별정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

※ 직종 개편 당시 별정직 존치 현황 - 16명

구 분	직급정원	직위분야(대상)	별정직 존치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별정5급	시장비서관(1) 정무비서관(1) 시의회비서관(3)	지방별정직(비서관)
	별정6급	시장비서(1)	지방별정직6급상당(비서)
	별정8급	시의회비서(1)	지방별정직8급상당(비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4급	시의회 전문위원(9)	지방별정직4급상당(전문위원)

※ 직종 개편 당시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현황 - 20명

- 시장실 : 계약가급(8), 계약나급(1)
- 정무부시장실 : 계약가급(6), 계약나급(1), 계약다급(1)
- 시의회 : 계약가급(1), 계약다급(1)
- 국제교류담당관 : 국제관계대사(1)

※ 2014.8월말 기준 비서관 및 비서와 의회전문위원(4급상당)등 별정직은 총 35명임.

〈 별정직공무원 정·현원 현황 〉

(2014.8.31.기준)

구 분	합계			2~3급			4급			5급			6급이하			비고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정원	현원	차이	
합 계	37	35	-2	1	1	0	11	10	-1	19	18	-1	6	6	0	
시 장 실	12	11	-1	1	1		1	1		9	8	-1	1	1		결 원
정 무 부 시 장 실	9	9								6	6		3	3		
국 제 교 류 담 당 관	1	1								1	1					국 제 관 계 대 사
시 의 회	15	14	-1				10	9	-1	3	3		2	2		퇴 직

- 폐지하려는 본 조례안의 경우 과거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표준안을 반영한 법규로서, 상위 법령의 규정으로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 인사운영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종전에는 없던 임기만료규정이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대통령령에 신규로 규정되었음.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용자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6조(전보)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의2(교육훈련) 제8조(당연퇴직) 제9조(직권면직)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제11조(휴직의 효력)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제13조(징계)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5조(시행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임용권자) 제4조(임용조건) 제5조(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제7조(임용절차) 제6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12조(면직) 제10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9조(근무성적평정) 제11조(시간제 근무) 제13조(징계 등)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시의회 전문위원의 경우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에 의거 기존 조례 효력을 유지하여 정년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지정일자 : 2012.9.13字)하였으며, 기존 인력 퇴직 후 개방형으로 전환 예정에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도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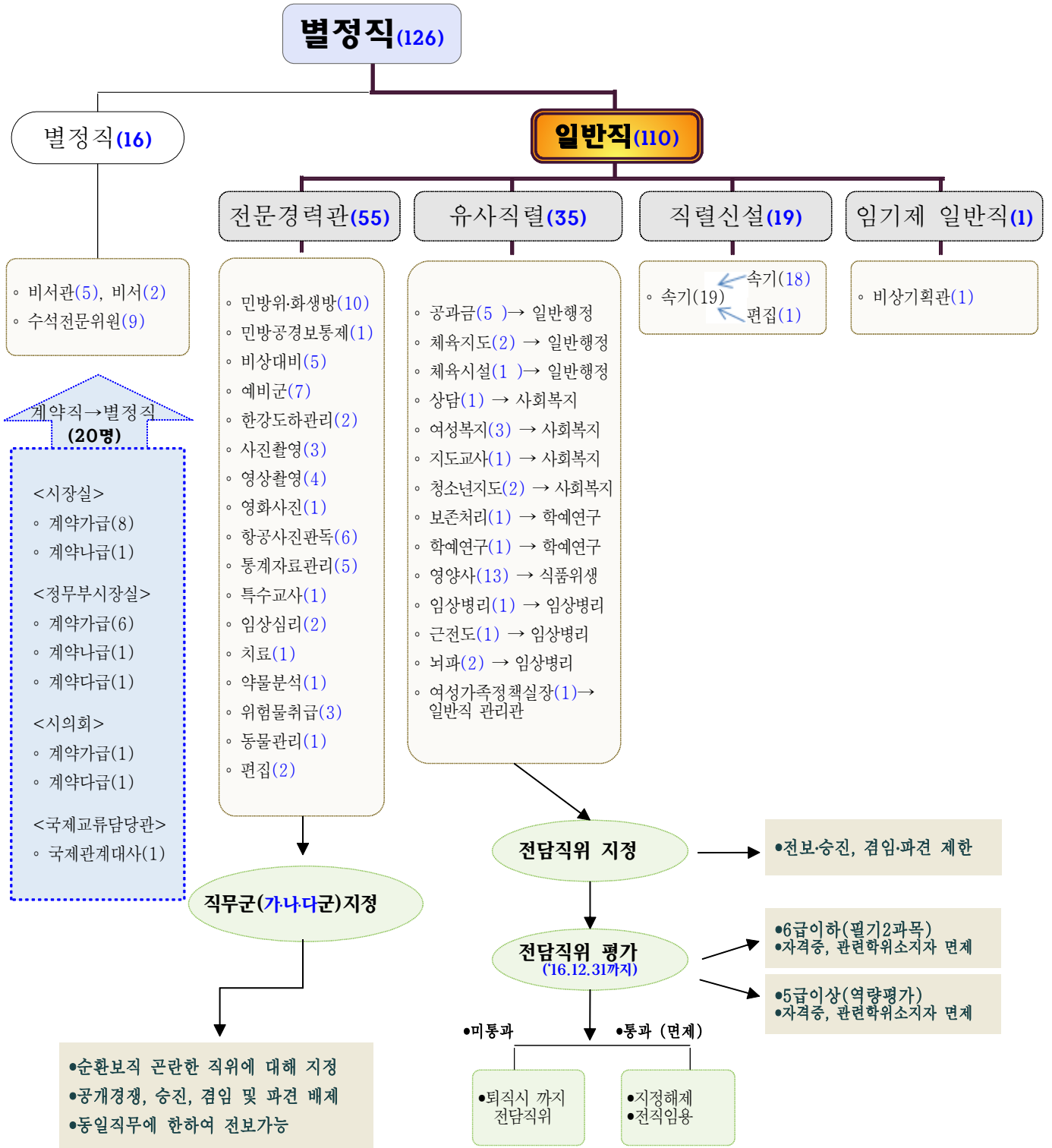
2) 「지방공무원법」 제2조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의미가 새로워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 한다는 측면과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다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폐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참고자료 ②, ③ 참조).
- ※ 직종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 정의 변경(지방공무원법 제2조)
 - (개정 전)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개정 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관리 규정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자율성 저해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안전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① 별정직 직종 개편 체계도 및 주요 내용

< 별정직 직종개편 체계도 >



< 별정직 직종 개편 세부내역 >

□ 비서·비서관, 의회전문위원 → 별정직 존치 (16명)

- 정원조례 상 별정직 비서 정원이며, 실제 비서·비서관으로 채용된 경우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존치

구 분	직급정원	직위분야(대상)	별정직 존치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별정5급	시장비서관(1) 정무비서관(1) 시의회비서관(3)	지방별정직(비서관)
	별정6급	시장비서(1)	지방별정직6급상당(비서)
	별정8급	시의회비서(1)	지방별정직8급상당(비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4급	시의회 전문위원(9)	지방별정직4급상당(전문위원)

* 상당계급이 5급이상인 비서관은 직급 또는 직명을 별정직으로만 표기

□ 전문경력관 전환 (55명)

- (개념) 계급 및 직군·직렬 구분없이 한 직위에서 계속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 (전환기준) ① 고도의 전문성 또는 오랜 경험이 요구되거나 특수한 직무분야로, ② 지휘·감독이 아닌 연구·자문·현장집행 등을 수행하며, ③ 순환보직이 곤란하여 장기 재직이 필요한 직위
- (재직자 전환) 현직자의 상당계급을 기준으로 5급상당 이상은 '가군', 6·7급상당은 '나군', 8·9급상당은 '다군'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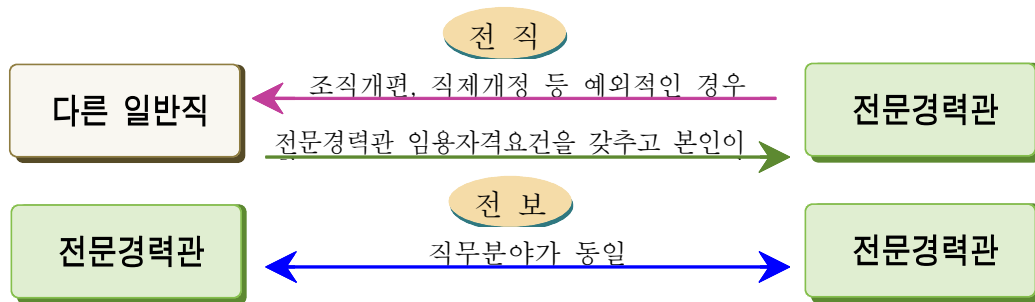
직 급	직위분야(대상)		전환직급 (2013.12.12일자)
별정5급	5	민방위·화생방(2), 비상대비요원(2), 예비군(1)	전문경력관 가군
별정6급 별정7급	49	민방공경보통제(1), 민방위화생방(8), 예비군(6), 비상대비(3), 한강도하관리(2), 치료사(1), 약물분석(1), 임상심리(2), 특수교사(1), 사진촬영(3), 영상촬영제작(4), 영화사진(1), 항공관독(6), 위험물취급(3), 동물관리(1), 통계자료(5), 편집(1)	전문경력관 나군
별정8급 별정9급	1	편집(1)	전문경력관 다군

* 국가보안목표시설인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4명)과 비상대비(2명)는 '비상대비' 직위로 명칭 통일

- (보수체계) 직무의 난이도·곤란도 등에 따라 3개의 직무군(가,나,다)으로 구분하고, 각 직무군은 단일호봉제로 설계

직무군	업 무 성 격
가군	매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매우 높은 업무
나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
다군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인사관리) 승진·전보·전직·파견 등 적용되지 않으며, 전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다른 일반직 ↔ 전문경력관 간 전직
 - (일반직→전문경력관 전직) 전문경력관 신규채용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직가능
 - (전문경력관→다른 일반직 전직) 조직개편·직제개정으로 해당 직위가 다른 일반직으로 변경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 허용
 - 직무분야·직무군이 동일한 전문경력관 직위 간 전보 가능



□ 일반직 유사직렬(전담직위)로 전환 (35명)

- (전환기준) ①기존 일반직 직렬에 재직 중인 사람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채용요건도 유사하며, ②해당 직렬에 재직 중인 종전 일반직과 순환전보가 가능한 경우 직종개편 시행일에 해당 직렬의 유사직렬(전담직위)로 지정

※ 일반직에 유사직렬이 있고, 업무성격상 순환전보 하더라도 당해 직위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 유사직렬로 전환하되, 본인이 전문경력관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위와 재직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가능

- (전환계급) 현원은 별정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계급으로 전환하
되, 연구직으로 전환시 5급상당은 연구관으로 전환

직 급	직위분야(대상)		직종개편시 전환직급 (2013.12.12일자)
별정1급	1	여성가족정책실장(1)	지방관리관 (전담직위)
별정5급	2	보존처리(1), 학예연구(1)	지방학예연구관 (전담직위)
별정6급	6	상담(1), 여성복지(3), 청소년지도(2)	지방사회복지주사 (전담직위)
	1	임상병리(1)	지방의료기술주사 (임상병리, 전담직위)
	3	체육시설(1), 체육지도(2)	지방행정주사 (전담직위)
	11	영양사(11)	지방식품위생주사 (전담직위)
별정7급	1	지도교사(1)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전담직위)
	3	근전도(1), 뇌파(2)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임상병리, 전담직위)
	2	영양사(2)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전담직위)
	2	공과금(2)	지방행정주사보 (전담직위)
별정8급	3	공과금(3)	지방행정서기 (전담직위)

- (인사관리) 전담직위에서 전보·승진·겸임·파견 등은 불가하며, 전담직위평가를 거쳐 전담직위 지정 해제
 - ※ 전담직위평가에 계속해서 미통과하는 경우 전담직위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하고, 보수 등은 일반직 해당직급과 동일하게 지급
- (성과평가) 현행 별정직처럼 일반직 상당직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경력) 전담직위 경력은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되었을 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불산입, 근속승진에는 별정직 7~9급의 경력 100% 합산
 - 다만, 전담직위 6급 이상 경력은 상당계급에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경력의 5할 인정

□ **직렬 신설(속기) 전환 (19명)**

- 계급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직위로 현원은 별정직 상당계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계급으로 전환

직급정원	직위분야(대상)	직종개편시 전환 직급 (2013.12.12일자)
별정6급	시의회 속기(2)	지방속기주사
별정7급	서울시 속기(1) 시의회 속기(6) 시의회 편집(1)*속기자격증보유*	지방속기주사보
별정8급	시의회 속기(6)	지방속기서기
별정9급	시의회 속기(3)	지방속기서기보

□ **임기제 일반직 전환 (1명)**

- 임기가 있는 직위(비상기획관)로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

직급정원	직위분야(대상)	직종개편 전환직급(직위) (2013.12.12일자)
별정2급	비상기획관(1)	임기제 지방이사관 (비상기획관)

< 일반직 전환대상 별정직 현황(30개 분야 110명) >

2013. 10. 현재

직무분야	정원(상당계급)								현원(상당계급)							
	합계	1급	2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1급	2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2	1	1	7	58	32	10	3	110	1	1	7	54	34	10	3
공 과 금	5					2	3		5					2	3	
근 전 도	1					1			1					1		
뇌 파	2					2			2					2		
동 물 관 리	1				1				1				1			
민 방공경 보통 제	1				1				1				1			
민 방위 · 화생 방	10			2	5	3			10			2	5	3		
보 존 처 리	1			1					1			1				
비 상 기 획 관	1		1						1		1					
비 상 대 비	5			2	3				5			2	3			
사 진 촬 영	3				1	2			3				1	2		
속 기	18				2	7	6	3	18				2	7	6	3
약 물 분 석	1				1				1				1			
여성가족정책관	1	1							1	1						
여 성 복 지	3				3				3				3			
영상촬영(영화사진)	5				2	3			5				1	3(1)		
영 양 사	14				12	2			13				11	2		
예 비 군	7			1	5	1			7			1	5	1		
위 험 물 취 급	3				3				3				3			
임상병리(임상심리)	3				2	1			3				1(1)	(1)		
지 도 교 사	1					1			1					1		
청소년지도(상담)	3				3				3				2(1)			
체육지도(체육시설)	3				3				3				2(1)			
치 료	1					1			1					1		
통 계 자 료 관 리	6				4	2			5				4	1		
특 수 교 사	1				1				1				1			
편 집	3				1	1	1		3				1	1	1	
학 예 연 구	1			1					1			1				
한강도해(한강안전)	2				1	(1)			2				1	1		
항 공 사 진	1				1				1				1			
항 공 판 독	5				3	2			5				1	4		

※ 별정직 존치 16명(비서관 5, 비서 2, 전문위원 9) 미포함

②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2014. 1. 1 시행) 주요내용

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안 제4조 신설)

비서관·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나. 임용절차(안 제6조 신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공고 및 임용시험 등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안 제7조 신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정하되,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적용을 배제함.

라. 비서관·비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동시 면직(안 제11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되도록 함.

마. 직권면직 및 징계(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③ 각 시도 별정직 조례 폐지 현황

시도명	조례명	폐지일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		
부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7-09	
대구	대구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3-03	
인천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4-09	
광주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999-12-31	
대전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2014-04-18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4년 9월 폐지예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3-11-20	
경기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2-28	
강원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7-11	
충북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2-07	
충남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향후 폐지 검토
전북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6-27	
전남	전라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8-01	
경북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7-07	
경남	경상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05-01	
제주	제주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08-12-31	